



제438회국회(임시회)
제2차 정무위원회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한 개선 요청
이행 의무화 〉

■ 김용만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6682호)

2026. 8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: 김용만의원 등 13인
2. 제 안 일: 2026. 2. 10.
3. 회 부 일: 2026. 2. 1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.

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3항 등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, 심의·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,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9제1항제6호의3, 제32조제3항 후단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7조의9(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등)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6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7. ~ 16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7조의9(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등) ① ----- -----.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 6의3.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관한 사항 7. ~ 1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 ①·② (생략)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④ ~ ⑥ (생략)	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요청할</u> ----- -. <u>이 경우 개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□ 현행법 제32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함)에 그 명칭, 운영 근거 및 목적, 개인정보의 항목, 처리방법, 보유기간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,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¹⁾

○ 구체적으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,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.²⁾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2.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
3.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
4. 개인정보의 처리방법
5. 개인정보의 보유기간
6.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 안전, 외교상 비밀,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2.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 및 감호의 집행, 교정처분, 보호처분,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3.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4.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
5.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

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,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2)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)

□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,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.

○ 특히 공공기관이 등록·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막대한 규모와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보호위원회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그 요청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.³⁾

□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제57조(등록·파기에 대한 개선권고)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
3.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
4.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
5.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3) 참고로 보호위원회에 따르면, 2020년 8월 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아직까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사례는 없음.

【참고자료】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('26.3.31. 기준)

(단위: 개, 건)

구 분	파일 수	개인정보 건수
중앙행정기관	14,803	32,552,234,576
광역자치단체	8,728	1,095,606,439
기초자치단체	150,567	4,507,427,094
교육행정기관	177,068	809,669,001
공공기관	7,837	37,255,767,546
지방공기업	6,435	445,742,698
특수법인	258	71,438,330
합 계	365,696	76,737,885,684

자료: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출자료

문 의 처

02)6788-5108